

改正된 商標審査基準(2)

3月 14日 正과 함께 施行

特許廳은 지난 3月 14日 현행 商標審査基準을 일부 改正했다. 현행 商標審査基準은 지난 83年 11月 14日 改正된 것이었다.

特許廳에 따르면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査基準은 따로이 定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改正日인 3月 14日부터 施行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査基準 施行前, 즉 3月 14日 以前에 한 商標登錄出願은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査基準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從前의 基準에 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査基準 全文을 3회에 나눠 실는다. 〈編輯者 註〉

〈前號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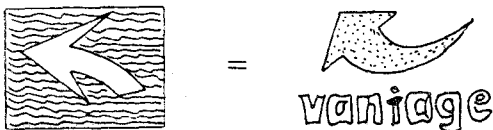
사. 第1項 第7號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

『(1) 商標에 대한 類似與否의 觀察方法은 全體的·客觀的·離隔觀察을 本旨로 하되, 商標構成中 印象의 部分(要部)에 대하여 比較하는 것으로 본다.

(2) 商標의 類似判斷은 原則적으로 同一한 것 外 商標로서 稱號·外觀·觀念中 어느 하나가 類似하여 去來上 商品出處의 誤認, 混同의 憂慮가 있는 商標는 類似한 것으로 본다. 다만, 稱號·外觀·觀念이 全體的으로 懸隔한 差異가 있으므로 去來上 商品·誤認이나 出處混同을 일으킬 念慮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例): ① 外觀類似: 商標構成의 全體的인 外觀觀察에 의하여 視角을 통하여 類似한 商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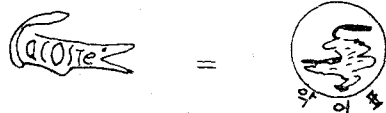
② 稱號類似: 聽覺을 통하여 去似者間에 號稱되는 데 따라 發音이 類似하면 類似商標

INTERCEPTOR=인터셉트,

REVILLON=REVLON, LYSOTAN=LOSOTAN
로 소 탄

③ 觀念類似: 商標가 같은 뜻에 의하여 그 뜻이 類似하면 類似商標

입금=왕=King, 평화=Peace, STAR=별



(3) 商標의 類似與否를 判斷할 때에는 특히 그 商標를 使用하는 商品에 관한 業界의 使用慣習(예컨대 稱號를 내는 方法)등 平均 需要者層을 考慮하여야 한다.

(例): ① 藥劑에 대한 獨逸語式 발음으로 表示한 것

② 化粧品에 대한 佛語式 발음으로 表示하는 것

(4) 登錄商標가 識別力을 喪失하였을 경우 또는 慣用商標로 되었을 경우에 他人이 이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를 새로 出願하였을 때에는 本號의 規定을 適用하며 아울러, 特別顯著性이나 慣用商標에 關係되는 規定도 適用하는 것으로 본다.

(5) 漢字商標의 稱號에 대한 判斷은 다음 例와 같다.

(例): 「牧丹」이란 商標는 「목단」 또는 「모란」으로 稱號한다.

(6) 登錄商標와 그 商標에 다른 文字 또는 圖形등을

附加하여 構成한 商標에 대하여 類似判斷을 할 때는 그 結合의 정도를 考慮하여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다만, 顯著하게 相異한 外觀·稱號나 觀念을 낳는 것이 明白할 때 또는 觀念에 있어서 實存觀念과 想像觀念이 類似한 標章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例) : 實存觀念—말 } 非類似
 想像觀念—용마 }

(가) 形容詞의 文字와 結合하여 구성된 商標는 形容詞의 文字가 結合되지 아니한 商標와 原則的으로 類似한 것으로 본다.

(例) : 類似한 것

- ① 「얼굴」과 「새얼굴」
- ② 「Star」와 「Super Star」
- ③ 「모란」과 「금모란」

(나) 2개의 語句로 結合된 商標는 原則的으로 각각의 부분만으로 된 商標와 類似한 것으로 본다. 다만, 語句로 結合된 語句가 一連不可分的으로 稱號되거나 觀念을 낳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例) : ① 類似한 것

- ② 「VOLCAN DAMEO」와 「VOLCAN」 또는 「DAMEO」
- ④ 「만수무강」과 「만수」 또는 「무강」
- ② 類似하지 아니한 것
- ② 「SANOMY」와 「SAN」 또는 「NOMY」
- ④ 「World」와 「World Cup」

(다) 긴 稱號로 構成된 商標 또는 結合商標의 일부가 특히 顯著하게 構成되었을 때에 그 主要部分에 의하여 簡略化될 可能性이 있는 商標는 原則的으로 그 簡略化될 可能性이 있는 부분만으로 된 商標와 類似한 것으로 본다.

(例) : ○ 「CHERRYBLOSSOMBOY」와

「CHERRYBLOSSOM」

○ 「CHRYSANTHEMUMBLUESKY」와

「CHRYSANTHEMUM」

○ 「ALCOS-ANAL」와 「아날」

(라) 指定商品과의 關係에서 慣用文字와 다른 文字를 結合하여 구성된 商標는 慣用文字를 除外한 부분만으로 된 商標와 類似한 것으로 본다.

(例) : 織物에 있어서 「King TEX」와 「King」

(마) 商號·商標(商號의 略稱으로 된 商標를 包含한다)에 대하여는 商號의 일부분으로서 通常 使用하는 株式會社·商社·會社·Co·Ltd·社·組合·協同組合 등의 文字(이들의 用語를 外國語로 翻譯한 文字도 包含한다)가 商標의 要部에 해당하는 文字 語頭나 語尾

의 어느 부분에 構成되어 있든지간에 原則的으로 이와 같은 文字를 除外하고 商標의 類似與否를 判斷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判斷에 있어서는 그 商號의 著名度와 去來上 通用되는 略稱의 著名度 및 語調를 감안하여 判斷한다.

(바) 前 “마”號의 경우 地理的 名稱과 結合한 法人格을 가지는 會社名 및 登記된 個人의 商號로서 業種이 다를 때에는 原則的으로 類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例) : ① 類似한 것

② 대한방직 주식회사와 대한모직 주식회사

④ 서울전선 공업사와 서울전기 공업사

② 類似하지 아니한 것

② 대한모직 주식회사와 대한철강 주식회사

④ 서울제과 공업사와 서울전기 공업사

(사) 指定商品과의 關係에 있어서 著名한 商標와 다른 文字를 結合한 商標는 原則的으로 그 著名한 商標와 類似한 것으로 본다.

(예) : 치약에 있어 “럭키”와 “○○럭키”

(아) 他人의 著名商標와 結合한 商標에 대하여는 著名商標와 類似하지 아니한 때에도 法 第9條 第1項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他人의 商品이나 營業의 混同 또는 第11號의 規定에 의한 品質의 誤認關係를 考慮하여야 한다.

(자) 記號·文字 및 圖形으로 자기 構成된 商標와 이들을 結合한 商標間의 對比 또는 이들을 結合한 商標끼리의 對比를 할 때에 類似判斷은 記號·文字 및 圖形의 結合狀態를 考慮하여야 한다.

(차) 指定商品 類似與否의 判斷基準은 原則的으로 商標法 施行規則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類似商品 區分에 의한다.

(카) 한글과 英文이 併記된 結合商標의 類似性 與否는 그 중 어느 한 部分(한글部分·英文部分)과 他商標의 該當部分과의 比較觀察에 의하여 判斷한다.」

아. 第1項 第8號

商標權이 消滅한 날로부터 또는 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確定日로부터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他人의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 다만, 他人의 商標權이 登錄實效前 1年以上 使用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1) 登錄의 實效 또는 消滅이라 함은 存續期間의 滿了·拋棄로 인한 登錄의 抹消·營業의 廢止·登錄의

取消 또는 無效의 確定을 말한다.

(2) 本號 단서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登錄 失效 또는 消滅日로부터 1年內의 期間안에 商標權者의 商標登錄 出願이 없을 때에도 原商標權者가 아닌 他人의 商標登錄 出願은 査定時期에 不拘하고 出願日字를 基準으로 하여 登錄할 수 없다.

(3) 登錄商標의 實效日로부터 1年以內의 期間안에 原商標權者가 아닌 他人의 先願이 있을 때에는 그 先願에 대한 拒絕査定 通知를 하기 전이라도 後願인 商標權者의 商標登錄出願을 登錄査定하는 것으로 한다.

(4) 本號의 단서의 경우 商標權者 자신이 登錄抹消 後 登錄失效 또는 消滅以前 1年以上 不使用하였음을 是認한 證據書面(本人 印鑑證明 添附)을 제출하거나 商標法 第34條 各號에 該當한지 1年以上이 超過되었음을 認定하는 書面을 提出하였을 때에는 登錄 査定하는 것으로 한다.』

자. 第1項 第9號

他人의 商品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需要者間에 顯著하게 認識되어 있는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의 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

『本號의 適用에 있어서는 法第8條第2項에 관한 基準을 準用한다.』

자. 第1項 第10號

需要者間에 顯著하게 認識되어 있는 他人의 商品이나 營業과 混同을 일으키게 할 念慮가 있는 商標

『(1) 「商品이나 營業과 混同」이라함은 商品出處나 營業(서비스업 包含)의 混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混同의 範圍는 同一 또는 類似商品 뿐만 아니라 商標의 著名度와 다른 系統의 商品 및 企業과의 關聯性에 대하여서도 考慮하는 것으로 한다.

(2) 他人의 著名商標와 結合한 商標에 대하여는 비록 兩者의 商標가 類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結合된 著名商標로 因하여 他人의 商品이나 營業과 混同을 일으킬 念慮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外國人 商標에 대하여 本號의 規定을 適用하고자 할 때에는 法第8條第2項의 規定에 관한 審査基準 제(9)의 規定을 準用한다.』

가. 第1項 第11號

商品의 品質을 誤認케 하거나 需要者를 欺瞞할 念慮가 있는 商標

『(1) 「商品의 品質을 誤認한다」함은 商品의 品質의 誤認과 商品自體의 誤認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2) 「商品의 品質의 誤認」은 그 品質이 그 商品에 實質의으로 存在하느냐를 不問하고 그 商品이 그 品質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一般需要者에게 誤認될 可能性이 있는 때를 말하고

(3) 「商品의 誤認」은 指定商品과의 關係에서 一般需要者에게 商品이 誤認될 可能性이 있는 때를 말하며

(4) 「需要者를 欺瞞한다」함은 國內商品을 外國商品으로 混同케 하는등 需要者를 속이는 것을 말한다.

(5) 指定商品과의 關係에서 商品의 誤認과 欺瞞을 할 憂慮가 있는 商標에 대하여 拒絕理由의 통지를 한 때에 있어 補正에 의하여 商品의 誤認과 欺瞞을 하지 아니하는 指定商品으로 改定하였을 때에는 出願의 要旨을 變更하지 아니하는 한 認定되는 것으로 한다.

(6) 指定商品과의 關係에서 商品의 誤認과 欺瞞을 할 憂慮가 있는 商標에 대하여 拒絕理由의 通知를 한 경우에 있어 出願書에 添附된 商標를 商品의 誤認과 欺瞞을 아니하도록 削除 補正하였을 때에는 그 補正한 部分이 單純한 附記 程度라고 認定되는 경우에 한하여 補正을 認定하는 것으로 하며 出願의 要旨을 變更한 때에는 이를 拒絕하는 것으로 한다.

(7) 外國文字 商標에 있어서 그 音의 國文字 併行表示의 補正은 要旨變更이 아닌 것으로 하며 商品의 誤認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 併行된 文字商標에 있어서 그 어느 하나의 文字를 削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8) 商品名稱을 結合하여 出願한 商品에 있어서 그 商品名稱과 指定商品의 內容이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混同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9) 商標中 「特許」「實用新案」「意匠」「KS」「○○博覽會××賞 受賞」등 商品의 品質을 保證하는 것으로 認識되는 文字가 結合되었을 때에 이를 削除하는 補正을 하면 認定하고 그러하지 않을 때에는 拒絕하는 것으로 한다.』

4. 法 第11條의 指定商品

法 第11條(1商標 1出願)

① 商標登錄出願은 商工部令으로 정하는 商品 區分內에서 商標를 使用할 1 또는 2以上の 商品을 指定하여 商標마다 出願하여야 한다.

『가. 指定商品은 具體的인 商品名을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 表記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商品에 있어서는 漢字 또는 外國語를 併行表示할 수 있다.

나. 指定商品을 1區分內에 明示되어 있는 모든 商品 또는 一部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出願할 때에는 “제 ○류 ××(包括概念 名稱의 全部 또는 一部)으로 記載할 수 있다. 이때에는 包括概念名稱 다음에(本類에 明示된 商品의 全部)를 附記하여야 한다.

(예) 第3類 菓子와 糖類(本類에 明示된 商品의 全部)

다. 包括概念인 商品을 指定할 때에 明示된 一部商品을 除外하거나 明示되어 있지 아니하는 商品을 包含하기 위하여 附記하는 表示方法은 認定되는 것으로 본다.

(예) ① 第6類 酒類(本類에 明示된 商品 全部중 燒酒만 除外)

② 第6類 酒類(本類에 明示된 商品 全部와 모과주를 포함함)

라. 指定商品이 商品의 區分과 맞지 아니할 경우 取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指定商品이 2이상의 商品區分 또는 한개의 指定商品이 2 類似商品群 이상에 속할 때에는 拒絕理由를 通知한다. 이때에 1 區分 또는 1 類似商品群에 속하는 商品만을 선택하여 補正하면 認定되는 것으로 본다.

(2) 出願書에 記載된 指定商品과 商品區分이 맞지 아니할 때에는 拒絕理由를 通知한다. 이때에 正當한 商品區分으로 補正하거나, 또는 要旨變更이 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올바른 商品名으로 補正하면 認定되는 것으로 본다.

(예) ① 「第7類 “사이다”」를 「第5類 “사이다”」로 訂正 表示한 것.

② “電子機械裝置”를 要旨變更이 되지 않게 具體化한 것.

다. 商品名의 包括性 與否는 原則적으로 商標法施行規則 第10條의 商品區分에 例示된 商品名을 基準으로 한다.』

5. 法 第11條의2의 商標登錄出願의 分割

① 商標登錄出願이 2이상의 商品區分에 걸쳐 指定商品으로 出願한 경우에는 査定의 通知書를 받은 날로부터 30日內에 그 指定商品이 속하는 商品區分別로 이를 分割出願할 수 있다. 다만, 商工部令이 정하는 商品區分中에 明示된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된 商標登錄出願은 原商標登錄出願時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13條의 2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42條 第2項 및 第3項 또는 第13條의 3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指定商品을 2商品區分 이상에 해당하는 商品으로 指定하여 商標登錄을 出願하였을 때에는 拒絕하며, 그 商品中에 一部商品이 商標法 施行規則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類似商品 細目에 明示되어 있지 아니한 商品이 包含되어 있어서 그 商品을 拒絕査定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正當한 商品 區分으로 分割登錄出願을 하였을 때에는 그 商品區分에 明示되어 있지 않은 商品일 경우에 認定되는 것으로 본다.

나. 商標登錄分割出願이 있을 때에 出願日字의 적용은 原商標登錄出願時에 出願한 것으로 認定한다.

다. 商標登錄分割出願에 있어서 原登錄出願時에 聯合關係에 있던 商標와의 聯合性은 없어진 것이며 分割出願되는 商品區分에 聯合商標가 있을 때에는 聯合商標로 出願하여야 한다.』

6. 法 第12條의 聯合商標

① 商標權者 또는 商標登錄出願者는 自己의 登錄商標나 登錄出願한 商標에 類似한 商標로서 그 指定商品과 同一區分內의 商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聯合商標로서만 登錄을 받을 수 있다.

『가. 聯合性은 聯合對象商標와 聯合할 商標가 全體의 構成에서 그 주된 要部가 동일하고 全體적으로 類似한 경우에 그 聯合性이 認定되는 것으로 본다.

나. 商標登錄出願·出願公告·登錄査定 등의 「聯合할 商標의 表示」에는 聯合關係에 있는 모든 商標의 登錄番號 또는 出願番號(登錄査定書에는 登錄 査定이 끝난 것과 出願公告에는 公告決定이 끝난 것에 한함)를 記載한다.

다. “甲”을 獨立의 商標로 하고 “乙”을 “甲”의 聯合商標로 하여 同日字로 登錄出願되었을 때에는 먼저 “甲”을 獨立商標로 公告 決定하고 “乙”을 “甲”의 聯合商標로서 公告 決定한다.

라. 同日字로 2개의 商標가 相互聯合으로 登錄出願되었으며 이와 同一 또는 類似한 本인의 先出願公告 또는 登錄된 商標가 없을 때에는 그중 先出願番號의 聯合商標 登錄出願을 獨立의 商標登錄出願으로 變更하게 한후에 處理하여야 한다.

마. 聯合商標 出願의 登錄査定前에 獨立商標의 出願

이 拒絕·取下·拋棄 또는 無效가 된 때에는 聯合商標 出願의 登錄査定을 獨立의 商標登錄出願으로 變更하게 한 후에 處理하여야 한다.

바. 商標法 第21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商標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出願의 分割에 의하여 原商標登錄出願 商品區分에서 分割更新登錄 出願된 商品區分에 登錄되는 商標에 있어서는 原商標登錄出願 商品區分에서 聯合關係에 있던 商標와의 聯合性은 없어진 것으로 보며 分割되는 商品區分에 分割되는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가 있는 경우에도 相互 共存하는 것으로 본다.

사. 聯合商標의 登錄出願이 登錄査定된 후에 獨立商標의 登錄出願이 無效·拋棄 또는 取下되었을 때에 聯合商標의 登錄出願에 대하여는 獨立商標登錄出願으로 登錄査定을 하였던 것으로 取扱한다.

아. 出願公告決定前 또는 出願公告決定의 謄本送達後에 審査時 聯合對象商標中 一部가 消滅, 取下, 無效 또는 拒絕査定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審査官은 職權에 의하여 削除할 수 있다.』

7. 法 第14條의 出願의 變更

① 出願者는 聯合商標의 登錄出願을 獨立의 商標登錄出願으로, 獨立의 商標登錄出願을 聯合商標의 登錄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이 있을 때에는 그 變更出願은 최초로 出願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은 最初에 한 出願의 査定 또는 審決이 確定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이 있을 때에는 最初에 한 出願은 取下한 것으로 본다.

⑤ 商標·서어비스標·業務標章 또는 團體標章의 登錄出願 相互間에 있어서는 出願變更할 수 없다.

『가. 商標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出願과 新規의 商標登錄出願間에 出願變更은 할 수 없다.

나. 商標登錄出願의 變更을 할 때에 있어서 補正 및 要旨變更事項의 處理는 第14條의 2의 規定을 準用하는 것으로 한다.』

8. 法 第14條의 2의 出願의 補正

①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期間을 정하여 節次의 補正을 命할 수 있다.

1. 節次가 第7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1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違反된 때

2. 節次가 法令에 정한 方式에 違反하거나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

② 商標登錄出願人은 최초의 出願의 要旨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査定 또는 審決이 確定되기 전까지 出願書에 記載된 指定商品 및 出願書에 添附한 商標를 補正할 수 있다. 다만 出願公告 決定謄本 送達後 拒絕理由에 대한 意見書나 異議申請에 대한 答辯書를 提出하는 경우 拒絕査定 不服抗告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그 意見書나 答辯書의 제출기간내 또는 拒絕査定不服抗告審判 請求日로부터 30日內에 한하여 補正할 수 있다.

『가. 審査官은 特許廳長 名義로 다음 各號1의 경우에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命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1) 商標登錄出願에 대한 節次의 能力이나 決定代理權 또는 節次行爲 등에 必要한 授權의 欠缺事項이 있을 때

(2)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진 자로서 節次를 밟을 것을 委任받은 代理人의 授權에 관한 未備 事項이 있을 때

(3) 商標登錄出願節次가 法令에 정한 方式에 違反되거나 手數料를 納附하지 아니하거나 未納이 있을 때

나. 商標登錄出願人의 補正事項은 다음 各號1에 해당하는 要旨變更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認定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1) 指定商品에 관한 것

① 指定商品의 範圍의 減縮 또는 一部削除는 要旨變更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誤打등 明白한 誤記를 訂正하는 것은 要旨變更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不明瞭한 記載를 釋明하기 위하여 指定商品에 漢文·英文 또는 간략한 說明을 ()에 表示하거나 添加하는 것은 要旨變更으로 보지 아니한다.

(2) 商標에 관한 것

① 商標의 構成中에 明白한 誤記를 訂正하는 것은 要旨變更이 아니다.

② 商標의 構成中에 附記의인 부분으로서 중요성이 없는 부분을 削除하는 것은 要旨變更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商標의 構成中의 일부분을 削除함으로써 商標의 本質的인 內容을 變更하였을 때에는 要旨變更으로 본다.

④ 商標의 構成中에 指定商品과 일치하는 商品名을 削除하는 것은 要旨變更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商標가 “장미검”이고 指定商品이 “검”일때 商標中 검부분을 削除하는 것.

⑤ 外國文字商標에 있어 그 音의 國文字를 併行表示하는 것은 要旨變更이 아니다. 다만, 併行表示된 文字商標에 있어서 그 어느 하나의 文字를 削除하는 것은 要旨變更으로 본다.

(3) 其他

商品에 대한 具體的인 疏明에 대해서는 補正通知할 수 있다.

(4) 商標登錄出願이 補正할 수 있는 期間에 관한것.

① 商標登錄出願에 있어서 登錄이나 拒絕査定 또는 審決이 確定되기 以前까지

② 商標登錄出願 公告決定謄本 送達後의 拒絕理由에 대한 意見書 또는 異議申請에 대한 答辯書 提出期間內

③ 拒絕不服抗告審判請求時에 請求日로부터 30日 以內』

9. 法 第16條의 拒絕

① 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出願에 대하여 拒絕査定을 하여야 한다.

1. 第8條, 第9條, 第11條 내지 第13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特許法 第40條에 의하여 商標登錄을 할 수 없을 때

2. 第27條 第1項, 第2項 또는 第5項에 違反되었을 때

3. 條約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을 할 수 없을 때

4. 條約當事國 領域內에서 登錄된 商標 또는 이와 類似한 商標로서 그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의 代理人이나 代表者 또는 商標登錄出願日前 1年內에 代理人이나 代表者였던 者가 權利者의 承諾을 받지 아니하는등 正當한 理由없이 그 商標의 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商標登錄出願을 한 것이라는 理由로 權利者로부터 異議申請이 있을 때

② 審査官은 商品登錄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絕査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出願人에 대하여 拒絕理由를 通知하고 期間을 指定하여 意見書 提出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가. 商標登錄出願이 拒絕할 理由가 있을 때에는 節次가 法令에 정한 方式에 不備한 점이 있어도 그 補正을 命하지 아니하고 拒絕理由를 通知할 수 있다.

나. 同一人이 同一商品區分內의 商品에 대하여 同一商標를 重複出願한 때에는 先出願에 관한 商標를 登錄

査定한 후에 後出願은 法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拒絕하는 것으로 한다. 商標權者가 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에 대하여 同一商品區分의 商品을 指定하여 登錄出願하였을 때에도 같은 것으로 본다.

다. 意見書에 의한 出願人의 補正은 法第14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出願의 補正”事項과 같다.

라. 先願의 商標登錄出願이 있을 때에는 後願에 대하여는 商標法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拒絕理由를 通知한 後에 先願의 商標處理에 따른 審査處理期間延長通知를 하여야 한다.

마. 聯合商標登錄出願書의 聯合한 商標 記載欄에 表記된 聯合對象商標가 잘못 表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拒絕理由豫告後處理하여야 한다.』

10. 法 第17條의 出願公告

① 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絕할 理由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出願公告를 할 것을 決定하여야 한다.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告 決定이 있을 때에는 그 決定의 謄本을 商標登錄 出願人에게 送達한 후 商標公報에 掲載하여 出願公告를 하여야 한다.

③ 特許廳長은 出願公告가 있는 날부터 30日間 出願書類 및 그 附屬物件을 特許廳에서 公衆의 閱覽에 供하여야 한다.

『가. 出願公告事項中 다음 事項에 대하여는 訂正公告를 하는 것으로 한다.

(1) 商標와 指定商品의 印刷가 極히 不鮮明할 때

(2) 印刷된 商標가 出願書에 添附된 商標와 相異할 때

(3) 商標 또는 指定된 商品의 전부가 漏落되었을 때

(4) 指定商品의 일부가 漏落되었을 때. 다만, 公告된 商品과 同種商品의 일부가 漏落된 것은 除外한다.

(5) 該當類別 구분이 變更되었을 때

나. 訂正公告가 있을 때에는 그 때에 出願公告된 것으로 取扱한다.

다. 前 第 “가”項에 제기한 以外の 事項이 誤記漏落된 부분이 審査에 本質的인 影響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訂正公告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계속)

商標는 企業 및 商品의 얼굴!